

표창 규정

제정 2009. 05. 25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3.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와 본 대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직원, 동문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표창과 대외기관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우당대상, 총장표창으로 한다.

제4조 (우당대상) ① 우당대상은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표창으로서 수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법인 및 대학 설립이념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학문의 발전 및 학생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창의적인 학사행정 수행으로 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하여 탁월하게 타의 모범이 된 자
5.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6. 학부(과)의 특성화, 국가고시 합격률, 취업보장형 학과 개발, 우수기업 취업실적, 산학연구 수주실적, 외국학생 유치실적, 국내외 입상실적 등에서 탁월하게 우수한 업적이 있는 자

② 우당대상은 법인이사장이 수여한다.

③ 총장은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법인사무국에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총장표창) 총장표창 수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
2. 학부(과)의 특성화, 국가고시 합격률, 취업보장형 학과 개발, 우수기업 취업실적, 산학연구 수주실적, 외국학생 유치실적, 국내외 입상실적 등에서 현저하게 우수한 업적이 있는 자
3.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된 자
4. 그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대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6조 (대외기관의 추천 의뢰 표창) 대외기관의 추천 의뢰 표창은 추천의뢰 기관의 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학문의 발전 및 학생지도와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학부(과)의 특성화, 국가고시 합격률, 취업보장형 학과 개발, 우수기업 취업실적, 산학연구 수주실적, 외국학생 유치실적, 국내외 입상실적 등에서 우수한 업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제7조 (공적심사)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표창의 추천과 절차) ① 표창수여 후보자 추천은 교원의 경우 학과(부)장이 추천하여 교학처장을 경유(정리), 직원의 경우 부서장이 추천하여 사무처장(국장)을 경유(정리)하여 기획조정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4. 03. 31)

② 기획조정처장은 추천공적조서를 수합하여 기록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14. 03. 31)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의 종류에 따라 제4조 내지 제6조의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기획조정처장은 표창수여 예정일 20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3. 31)

제9조 (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0조 (표창 기회의 공정) 총장은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부상 및 대우) ① 표창의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우당대상의 상패 또는 상장 그리고 부상은 대학에서 부담한다.

③ 표창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교직원 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우대한다.

제12조 (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5월 15일 개교기념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기관의 추천 의뢰 표창은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제1호서식 > (개정 2015. 03. 01.)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 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소 속		⑤직위(직급·계급)	
⑥추천순위		⑦공적분야	
⑧공적기간	년 월 ~ 년 월		
⑨공적요지(90자 이내)			
조 사 자			
⑩소 속			
⑪직위(직급·계급)		⑫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

⑬주요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학(경)력사항	연 월 일	학(경)력사항
~		~	
~		~	
⑭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	
.	
공 적 사 항			

<별지제2호서식>

표창장(패)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표창문)

년 월 일

경동대학교총장(이사장) ○ ○ ○